

의안번호	2213671
의 퇴 인	최은석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 계 번호	25E5668

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금융·보험업자의 과세표준에 유가증권 손익통산 추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제3항 (과세표준과 세율)	○ 금융·보험업자의 과세표준에 유가증권 손익통산 추가 － (현행) 유가증권의 매각익·상환익(「교육세법」 제5조제3항), 파생상품·외환거래로 인한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(「교육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5호) － (개정안) 유가증권·파생상품·외환거래로 인한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	조세지출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제3항 (과세표준과 세율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 유가증권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반영할 경우 세수감소가 예상
 - 현행은 유가증권의 매각익·상환익(「교육세법」 제5조제3항)과 파생상품·외환거래로 인한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(「교육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5호)을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것에서, 개정안은 유가증권·파생상품·외환거래로 인한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에 반영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유가증권 거래 관련 수익 및 손실 규모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나, 동 항목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관계로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움
 - 또한, 납세의무가 있는 개별 금융·보험기관 단위에서 개정안의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·파생상품·외환거래로 인한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결과를 합

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에도 한계가 따름

- 참고로,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금융·보험업자에는 정부투자금융기관¹⁾ 및 민간금융기관²⁾이 있으며(「교육세법」 제3조 및 별표), 동 기관의 이자수입, 배당금, 수수료, 보증료, 유가증권 매각익·상환익, 보험료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(0.5%) 부과
- 교육세 금융·보험업분 신고액은 2023년 1조 5,480억원 등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증가 추세(연평균 14%)

[표 1] 교육세 금융·보험업분 신고액 추이: 2021~2023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1	2022	2023	(연평균 증감률)
교육세 금융·보험업분	11,933	12,733	15,480	(14%)

자료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, 각 년도

- 2023년 교육세 금융·보험업분 전체 과세표준은 310조원이며 이중 유가증권 매각·상환익 관련 과세표준은 23조원 수준으로 7.4% 비중 차지

[표 2] 교육세 금융·보험업분 전체 및 유가증권 매각·상환익 관련 과세표준 현황:
2021~2023년

(단위: 조원)

구분	2021	2022	2023
전체	239	255	310
유가증권 매각·상환	28	25	23
	(11.7%)	(9.8%)	(7.4%)

자료: 국세청

1)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

2) 일반은행, 종합금융사, 상호저축은행, 보험사, 농·수협, 집합투자업, 신탁업, 환전영업, 투자매매·중개업, 여신전문업, 대부업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